

손실 해외펀드에 환차익을 이유로 한 과세 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에 대한 환차익을 이유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 고 판결

2012. 1. 12. 서울행정법원이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 환차익만 분리하여 이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근 3년간 해외펀드를 환매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차익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던 투자자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및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경 및 사실관계]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두 가지 원인은 해당 펀드가 투자한 해외국가주식의 가격 등락 및 투자기간 동안의 환율변동인바, 해외펀드 중 환해지가 되지 않은 펀드는 그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펀드투자자 개인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2007. 6. 1.부터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해외펀드투자자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의 구 조특법 규정이 시행된 이래, 과세당국은 주식가격 등락 및 환율변동의 손익을 구분하여 펀드투자국가의 주가 하락 등으로 원금 손실이 났더라도 원화 약세로 환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환차익 부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A씨는 2007. 6.부터 8.경에 걸쳐 함께 230,000,000원을 투자하여 일본펀드(본건 펀드상품)를 매입하였다가 2008. 12. 2. 손실의 폭이 확대되자 본건 펀드상품을 환매하였는데, 증권회사는 환매금액 185,518,844원 중 환차익에 해당하는 157,846,781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24,308,370원을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한 후 나머지 161,210,474원만을 환매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위 환매대금 중 환차익 부분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경정청구 과정에서 환차익 산정방법의 변경으로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인 10,880,796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는 (i) 투자자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 후 환매하였는데 환차익 부분과 주식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 부분이 서로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 환차익 부분을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①), (ii)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과세특례가 환차익 부분에도 적용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쟁점 ②), (iii) 전체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 중 환차익 부분만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쟁점 ③)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배당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양자를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배당소득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투자신탁의 이익 중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본 과세과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쟁점 ①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쟁점 ②와 쟁점 ③에 대하여는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위 판결은 ‘원금손실을 본 해외펀드의 경우 환차익 부분만이 별도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하여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원금손실을 본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구 조특법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법원이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나, 법률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별도 과세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과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합하여 배당이익을 계산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급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7. 6. 1.부터 2009. 12. 31. 사이에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환차익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던 금융기관으로서 (i)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책임 문제, (ii) 과세관청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천징수를 당한 투자자로서도 (i)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ii)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권리구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춘 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4213, 이메일: ccho@shinkim.com)

황인석 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4365, 이메일: ishwang@shinkim.com)

이민현 변호사 (전화번호: 02 316 1639, 이메일: mhylee@shinkim.com)

Seoul Office Tel : + 82 2 316 4114 Beijing Office Tel : + 86 10 8447 5343 Shanghai Office Tel : + 86 21 6235 0411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